



광진구



수신자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박노경)(0508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길 14 2층 (자양동))
(경유)

제 목 조합설립인가 처리 알림(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)

1.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2. 귀 조합에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조합설립인가

조 합 명	조합장	조합원수	동의율	사업시행예정지	면 적	인가일
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	박노경	1,567명	80.56%	자양4동 57-90번지 일대	139,130㎡	2026.09.10.

3. 아울러,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 운영 및 정비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합설립인가서 1부.
2. 조합정관 1부.
3. 조합설립인가 조건 1부. 끝.

광진구



주무관 조준영 신속통합기획팀장 한문식 주거사업과장 09/10 임성섭
협조자

시행 주거사업과-2945 (2026. 9. 10.) 접수 ()

우 050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, 16층 주거사업과 (자양동) / <http://www.gwangjin.go.kr/>

전화 02-450-9703 / 팩스 02-411-1755 / joiy7011@gwangjin.go.kr / 비공개(6)